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안(의안번호 제12657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영리법인이 수유자 등인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 확대(정부안) ...	3
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범위에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 추가(차규근의원안, 정부안)	5
3. 배우자 등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 추정 배제 사유에 다자간 매매채결회사 주식거래 포함(정부안)	9
4.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 확대(정부안)	13
5. 조문정비(정부안)	15

I. 개요

1. 정부안(의안번호 제1265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5. 9. 3.
- (3) 회 부 일 : 2025. 9.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채결회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채결회사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증권시장과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에서 제외하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의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영리법인이 수유자 등인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 확대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영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제3조의2②) ○ 요건: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u>상속인과 그 직계비속</u> 이 있는 경우 ○ 납부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10÷100)} ×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 ○ 납부의무자 - 상속인과 상속인의 직계비속 - (<u>신 설</u>)	☐ 납부의무자 추가 ○ 요건: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u>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u> 가 있는 경우 ○ ○ 납부의무자 - (현행과 같음) - <u>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u>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7)

☐ 개정안은 유증 등을 받은 영리법인 주주로서의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현행 상속인과 상속인의 직계비속에 더하여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

☐ 현행법¹⁾은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해당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인 상속세 납부액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계산된 상속세액에 대해 전체 상속재산 중 영리법인에 유증된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에서 영리법인에 유증된 상속재산의 10%를 뺀 금액에 대해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됨²⁾.

동 규정은 유증, 사인증여 등에 따라 영리법인이 받은 수증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고 상속세는 면제됨³⁾에 따라 높은 상속세율 대신 가족법인 등을 활용한 낮은 법인세율을 부담하는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마련된 것임.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②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text{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text{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times 10 \div 100)) \times \text{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일반 내국법인 세율]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100분의 10	2억원 이하	100분의 9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00분의 2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00분의 19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0분의 3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100분의 2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00분의 40	3천억원 초과	100분의 24
30억원 초과	100분의 50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동 규정에 따른 과세 건 수는 7건이고, 납부세액은 7억원 수준임.

- 유증 등을 받은 영리법인 주주로서의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에 더하여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은 배우자는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및 직계비속과 경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점, 부부간에는 높은 수준의 증여공제⁴⁾를 통하여 상속재산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변칙적인 상속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161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범위에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 추가(차규근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45조의5) ○ 대상: 특정법인(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u>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u> 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 -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등	☐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범위 확대 ○ 대상: 특정법인(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u>지배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u> 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 - (현행과 같음)

* 차규근의원안 2025. 5. 7. 발의(의안번호 10391),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7)

☐ 개정안은 특정법인(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에 특정법인이 그 지배주주와 거래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45조의5⁵⁾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 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

함)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현저한 저가 혹은 고가로 거래를 하거나 혹은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 받는 등의 경우 그로 인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고 있음.

이는 특정법인에 무상지원 혹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재화·용역 거래를 통한 부의 변칙적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가령 자녀소유의 특정법인에 부모 등 자녀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는 등으로 특정법인의 가치가 올라가면 자녀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실질적인 증여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임.

□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같이 증여로 의제되는 특정법인과 거래 당사자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⁶⁾하고 있어 지배주주

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 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본인과 특정법인이 거래한 경우는 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가령, 부모가 51%, 자녀가 49% 지분을 보유한 특정법인을 가정한다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부모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에 따른 당해 법인의 이익 중 49%는 자녀가 향유하게 되는데 이때 거래의 당사자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지배주주가 되므로 과세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임.

□ 이에 개정안은 특정법인과의 거래 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에 지배주주를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첫째, 개정안은 특정법인을 통한 우회적 증여에 대한 과세를 통해 부의 변칙적인 이전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배주주가 본인 소유의 법인에 증여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의 자녀, 친족 등이 그 증여 이익을 향유한다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둘째, 현행 법문상 특정법인과 지배주주가 거래 시 증여의제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보완할 수 있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와 과세관청은 동 규정의 입법연혁 및 취지,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점⁷⁾ 등을 고려하여 지배주주 본인과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법문언상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161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3. 배우자 등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 추정 배제 사유에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주식거래 포함(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제44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 적용배제 -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증여 추정 배제 사유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주식거래 포함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배제 사유 추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7)

□ 개정안은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배제 사유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⁸⁾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 회사(Alternative Trading System, 이하 “ATS”라고 함)를 통한 주식거래를 포함하려는 것임.

참고로, 2013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ATS가 도입되었고⁹⁾, 넥스트레이드(NXT)가 금융위원회의 인가(2025. 2. 5.)를 거쳐, 3월 4일 ATS 시장이 출범하였음.¹⁰⁾

□ 현행법¹¹⁾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⑤ 이 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매매체결대상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 업무(이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라 한다)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경쟁매매의 방법(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매매체결대상상품이 상장증권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9)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도입은 증권 유통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시장에서 한국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간의 경쟁이 발생하게 되어 가격인하로 인한 거래비용 감소, 거래체결속도 증가, 고객 중심의 수수료체계 도입을 통한 서비스 향상 등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2012.9.)

10) ATS 준비법인인 넥스트레이드(NXT)는 ATS 예비인가 취득(2023.7.) → 본인가 취득(2025.2.5.) → ATS 시장 개설(2025.3.4.)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양도자가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특수관계인과 양수도 거래 형식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다만, 경매절차,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증권시장을 통한 거래,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 객관적인 대가의 지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적용 제외 대상에 ATS를 통한 주식거래를 추가하는 개정안은 ATS를 통한 거래도 불특정 다수가 거래에 참여하고, 시장의 최우선 매수·매도 가격에서 거래되는 경쟁매매 방식인 경우는 특정 당사자간 거래를 통한 가격 조작이 어렵다는 점에서 증권시장을 통한 거래와 같이 취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증권시장과 ATS 비교]

구 분	증권시장	ATS
거래 대상	상장주식·DR 등 증권, 파생상품	상장주식·DR
거래종목 수	·(주식) 2,877종목 ·(파생상품시장) 350개 상품	(주식) 646종목
업무 범위	매매체결(거래시장), 상장, 청산	매매체결(거래시장)
운영 시간	· 주식시장 (정규시장) 09:00~15:30 · 파생상품시장 (정규거래) 08:45~15:45	08 : 00~20 : 00
시장 구분	장내시장	좌동
거래 방식	경쟁매매(불특정 다수간 거래, 복수가격) 상대매매(1:1 거래, 지정가격)	
시장 감독	금융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자료; 기획재정부, 금융투자협회

문 의 처

02)6788-5161

4.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 확대(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제48조) ☐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 출연재산 -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 출연재산의 매각대금	☐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 확대 ☐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 출연재산 (<u>출연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매각대금·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7)

☐ 개정안은 사후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범위에 해당 출연재산 외 매각대금 또는 운영소득으로 재차 취득하는 재산 등 출연재산을 원천으로 취득하는 재산 일체가 적용되는 점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 과세관청은 그간 해석¹²⁾을 통해 출연재산 외 출연재산의 운용·처분 등을 반복하여 취득한 재산 일체를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해왔으나, 최근 대법원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만 사후관리 대상이라고 판시하여 과세가 어려운 상황임.

대법원 2021두54293, '24.9.13

사후관리 대상인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출연받은 재산’은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당해 재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를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까지 포함하는 것은 유추·확장해석에 해당함

12) 재산세과-548('10.7.26) / 서면4팁-2755('06.8.10)

□ 이에 개정안은 당해 출연재산 외 매각대금 또는 운영소득으로 재차 취득하는 재산 등 출연재산을 원천으로 취득하는 재산 일체에 대하여도 종전 해석과 같이 사후관리 의무가 적용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당초 출연재산을 원천으로 취득한 재산도 불산입혜택이 적용된 것이므로 직접 공익목적 사용 의무 등 사후관리 의무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 판례에 따라 출연재산을 원천으로 취득하는 재산 일체에 대해 사후관리 의무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이를 활용한 증여세 회피 행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161

5. 조문정비(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5조제3항) ☐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문정비 ☐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7)

☐ 개정안은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을 전제로 한 조문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된 「소득세법」 인용 조문¹³⁾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임.

문 의 처

02)6788-5161

13) 舊, 「소득세법」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87조의27(준용규정) 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7조, 제33조, 제39조, 제43조, 제44조, 제57조, 제57조의2, 제60조,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82조, 제86조, 제98조, 제100조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② 제101조를 준용하는 경우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은 "1년"으로 본다.

「소득세법」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87조의27 삭제